
보상위원회규정

씨에스윈드 주식회사

CS WIND CORP

- 목 차 -

제1조 (목적).....	2
제2조 (적용범위).....	2
제3조 (구성).....	2
제4조 (소집방법 및 절차).....	2
제5조 (회의장소).....	3
제6조 (결의방법).....	3
제7조 (업무).....	3
제8조 (의사록).....	3
제9조 (간사).....	4
제10조 (기타).....	4
부칙	

보상위원회규정

2022년 3월 29일 제정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씨에스윈드 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 라 한다) 보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총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회 위원 중 1인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다.
- ③ 위원장 유고 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④ 위원회 소속의 이사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3달 내 위원회 참여에 결격사유가 없는 이사를 이사회에서 신규 선임한다.

제4조 (소집방법 및 절차)

- ① 위원회는 감사 받은 재무제표에 따른 성과보상 및 지급할 보수의 한도의 심의를 위해 반기 1회 또는 년 1회 이상 소집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일로부터 1주일 전에 소집통지서 또는 구두로 위원 전원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의 소집통지서는 우편, 팩스, 전보,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게 할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.
- ④ 위원장은 긴급사유의 발생 등으로 제2항의 소집절차를 거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전원의 동의에 의해 제2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5조 (회의장소)

위원회는 본사에서 개최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지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개최할 수 있다.

제6조 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.
-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심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제3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④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-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원의 수는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7조 (업무)

위원회는 성과보상 체계를 심의하며, 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- 가. 대표이사 및 각 이사에 대한 성과보상 및 지급할 보수의 한도 심의
- 나. 성과보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대한 심의
- 다. 성과보상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와 심의
- 라. 그 밖에 성과보상체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

제8조 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에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 단, 제6조제3항에 의한 결의의 경우 직접 회의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당해 결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

- 며, 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.
- ③ 의사록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, 관리한다.

제9조 (간사)

-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보좌하고, 관련사무를 담당한다.

제10조(기타)

위원회는 이 규정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지침으로 제정·시행할 수 있다.

부칙(2022. 3. 29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.